



제30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5.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용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4년 8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예산안 총괄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을 통하여 편성된 추경(안)임.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907억 5,221만 5천원 대비

1,099억 5,998만 6천원이 증가된 2조 5,007억 1,220만 1천 원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3억 921만 9천원이 증가된 2조 1,427억 2,071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06억 5,076만 7천원이 증가된 3,579억 9,148만 7천 원임.

회계별 예산 총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2,500,712,201	100.00	2,390,752,215	100.00	109,959,986	4.60
일반회계	2,142,720,714	85.68	2,093,411,495	87.56	49,309,219	2.36
특별회계	357,991,487	14.32	297,340,720	12.44	60,650,767	20.40

공기업특별회계	182,631,420	7.30	181,582,860	7.60	1,048,560	0.58
기타특별회계	175,360,067	7.01	115,757,860	4.84	59,602,207	51.49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320,037,435	1,268,919,303	51,118,132	4.03%
일 반 회 계	1,236,038,241	1,210,348,941	25,689,300	2.12%
특 별 회 계	83,999,194	58,570,362	25,428,832	43.42%

□ 세입예산(전체)

- 총 1,099억 5,998만 6천원이 증가된 2조 5,007억 1,220만 1천원 규모임
 - 세외수입 : 521억 5,972만 1천 원,
 - 지방교부세 등 : 16억 9,800만 원
 - 조정교부금 등 : 50억 원
 - 보조금 : 38억 3,503만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72억 6,723만만 5천 원 등

- 일반회계 : 총 493억 921만 9천원이 증가된 2조 1,427억 2,071만 4천원 규모임.
 - 세외수입 : 173억 8,949만 원,
 - 지방교부세 등 : 16억 9,800만 원
 - 조정교부금 등 : 50억 원

- 보조금 : 42억 5,421만 9천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209억 6,751만 원 등

○ 기타특별회계 : 총 596억 220만 7천 원이 증가된 1,753억 6,006만7 천원
규모임

- 세외수입 : 332억 1,267만 1천원
- 보조금 : 8,981만 1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2억 9,972만 5천원 등

○ 공기업특별회계 : 총 10억 4,8568만 원이 증가된 1,826억 3,142만원
규모임

- 세외수입 : 15억 5,756만 원
- 보조금 : △5억 900만 원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52.79%인 1조 3,200억 3,743만 5천원 규모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2,103억 4,894만 1천원에서 2.12%인 256억 8,930만 원이 증가한 1조 2,360억 3,824만 1천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69%에 해당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5억 7,036만 2천 원에서 43.42%인 254억 2,8383만 2천원이 증가한 839억 9,919만 4천원으로 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47.90%에 해당함 .(공기업 특별회계 없음)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총괄(전체)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320,037,435	1,268,919,303	51,118,132	4.03 %
복지국	소계	983,931,109	968,092,412	15,838,697	1.64 %
	복지정책과	16,915,598	16,785,474	130,124	0.78 %
	복지행정과	113,466,370	112,326,658	1,139,712	1.01 %
	노인복지과	404,926,878	396,400,102	8,526,776	2.15 %
	장애인복지과	102,598,661	99,686,978	2,911,683	2.92 %
	여성아동과	98,629,659	97,966,864	662,795	0.68 %
	보육정책과	247,393,943	244,926,336	2,467,607	1.01 %
환경국	소계	254,969,448	223,621,198	31,348,250	14.02 %
	환경정책과	36,520,017	33,248,180	3,271,837	9.84 %
	기후에너지과	54,916,817	53,214,360	1,702,457	3.20 %
	자원순환과	141,112,355	118,957,523	22,154,832	18.62 %
	생태하천과	11,735,821	9,707,459	2,028,362	20.89 %
	산림녹지과	7,807,164	6,638,147	1,169,017	17.61 %
	공원조성과	2,877,274	1,855,529	1,021,745	55.06 %
남양주 보건소	소계	36,139,921	33,127,137	3,012,784	9.09 %
	보건정책과	13,719,183	11,845,564	1,873,619	15.82 %
	건강증진과	14,494,407	13,485,430	1,008,977	7.48 %
	치매건강과	5,123,703	4,989,934	133,769	2.68 %
	동부보건센터	2,802,628	2,806,209	△3,581	△0.13 %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계	11,802,224	11,781,153	21,071	0.18 %
	보건행정과	5,978,049	6,261,447	△283,398	△4.53 %
	건강증진과	5,824,175	5,519,706	304,469	5.52 %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소계	33,194,733	32,297,403	897,330	2.78 %
	공원관리과	19,256,399	18,951,923	304,476	1.61 %
	하천공원관리과	10,216,615	9,625,273	591,342	6.14 %
	휴양시설관리과	3,721,719	3,720,207	1,512	0.04 %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일반회계)

○ 먼저, 복지국 소관

기정예산액 9,597억 1,131만 6천 원 보다 1.65% 증가한 9,755억 6,421만 5천 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3억 8,952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8억 6,120만 8천원 등을 증액 편성

○ 다음은 환경국 소관

기정예산액 1,734억 3,193만 2천 원 보다 3.40% 증가한 1,793억 3,714만 8천 원이며, 소하천정비사업(장내천)(전환사업) 18억 880만 원,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

○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액 331억 2,713만 7천 원 보다 9.09% 증가한 361억 3,992만 1천 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자체) 4억 3,633만 5천 원 등을 편성

○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액 117억 8,115만 3천 원 보다 0.18% 증가한 118억 22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기정예산액 322억 9,740만 3천 원 보다 2.78% 증가한 331억 9,473만 3천 원이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 8,109만 6천 원 보다 0.17% 감소한 83억 6,689만 4천 원을 편성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7,010만 9천 원 보다 10.59% 증가한 340억 2,952억 2천 원을 편성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8,476만 2천 원 보다 0.27% 증가한 1억 8,526억 2천 원을 편성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2억 3,439만 5천 원 보다 115.33% 증가한 414억 1,751만 6천 원을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해당사항 없음

검토 의견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